

환매권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당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의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835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8.13 선고 92다50652 판결 ; 1994.08.12 선고 93다50550 판결 ; 1995.02.03 선고 94다27113 판결 ; 1995.11.28 선고 94다61441 판결 ; 1995.11.28 선고 95다24845 판결 ; 1996.02.09 선고 94다46695 판결